장기보장성보험 적립부분 만기유지환급금 제도 특별약관

제1조(특별약관의 체결 및 적용계약)

- ①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보험계약(이하 보험계약이라 합니다)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.
- [2]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사항이 모두 충족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만기유지환급금을 적용합니다.
 - 1. 보험계약이 보험업감독규정 제1-2조 제3호의 "순수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장성보험"인 경우
 - 2. 계약체결시점에 산출한 보험계약의 "예상만기환급금"이 "총납입예상적립보험료"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
 - 3. 보험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입이 완료되고 보험기간 종료시점까지 유지된 보험계약
- ③ 제2항 제2호의 "예상만기환급금"은 계약체결시점의 적립보험료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납입해당일에 정상납입하는 기준으로 "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"에 따라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이 보험계약의 보장부분 적용이율(단, 금리고정형인 경우 적립부분 적용이율)로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.
- ④ 제2항 제2호의 "총납입예상적립보험료"는 계약체결시점의 적립보험료를 기준으로 적립보험료의 납입기간과 납입주기를 곱한 적립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.
- ⑤ 계약을 체결할때에 피보험자가 될 자가 출생전자녀(태아)이고 "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"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에서 적립보험료는 태아 보장기간이 끝난 이후의 적립보험료를 말합니다.

제2조("만기유지환급금"의 정의 및 지급)

- ① 이 특별약관에서 "만기유지환급금"이라 함은 총 납입한 적립보험료에 1원을 더한 금액에서 이 보험계약의 "보장부분 적용이율로 적립한 예상만기환급금"과 "적립부분 공시이율로 적립한 예상만기환급금"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. 단, 금리고정형 상품의 경우 보장부분 적용이율 및 적립부분 공시이율은 적립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.
- ② 제1항의 예상만기환급금은 실제 납입한 적립보험료로 산출한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"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"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.
- ③ "만기유지환급금"이 0원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"만기유지환급금"을 지급하지 않으며, "만기유지환급금"이 0원보다 큰 경우 일의자리에서 올림하여 계산한 만기유지환급금을 이 보험계약의 만기환급금에 더하여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.

배 시 만기유지환급금 지급예시

- · 10년만기 전기납, 월납, 적립보험료 1만원인 보험계약
 - 총납입예상적립보험료 = 120만원(1만원 x 10년 x 12개월)
 - 예상만기환급금 사례별 만기유지환급금
- (예시1) 예상만기환급금(보장부분 적용이율 적용) = 130만원
 - : 총납입예상적립보험료(120만원) < 예상만기환급금(보장부분 적용이율 적용)(130만원)
 - → 만기환급금 금액과 상관없이 만기유지환급금 적용계약 아님
 - → 만기유지환급금 = 0
- (예시2) 예상만기환급금(보장부분 적용이율 적용) = 110만원

예상만기환급금(적립부분 공시이율 적용) = 100만원

- : 총납입예상적립보험료(120만원) > 예상만기환급금(보장부분 적용이율 적용)(110만원)
 - → 만기유지환급금 적용계약
 - → 만기유지환급금 = 120만원 + 1원 Max[110만원, 100만원]
 - = 10만 1원
 - = 10만 10원(일의자리 올림)
- (예시3) 예상만기환급금(보장부분 적용이율 적용) = 110만원

예상만기환급금(적립부분 공시이율 적용) = 130만원

- : 총납입예상적립보험료(120만원) > 예상만기환급금(보장부분 적용이율 적용)(110만원)
 - → 만기유지환급금 적용계약
 - → 만기유지환급금 = 120만원 + 1원 Max[110만원, 130만원]
 - = 9만 9,999원

만기유지환급금이 0원보다 작은 경우에는 만기유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음

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만기유지환급금은 "총납입평균적립보험료"에 1원을 더한 금액에서 이 보험계약의 "보장부분

적용이율로 적립한 평균적립 만기환급금"을 차감한 금액(0원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0원으로 하며, 0원보다 큰 경우 일의자림에서 올림)을 한도로 합니다.

- 5 제4항의 "총납입평균적립보험료"는 납입기간동한 납입한 "평균적립보험료"의 합계를 말합니다.
- 6 제5항의 "평균적립보험료"는 납입방법에 따른 보험가입후 1년간 납입한 적립보험료의 평균보험료를 말합니다.
- ① 제4항의 "보장부분 적용이율로 적립한 평균적립 만기환급금"은 평균적립보험료로 산출한 평균적립순보험료를 이 보험계약의 보장부분 적용이율(단, 금리고정형의 경우 적립부분 적용이율)로 "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"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.

제3조(만기유지환급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)

- ① "만기유지환급금"은 보험계약 종료시점에 제1조(특별약관의 체결 및 적용계약)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, 이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"만기유지환급금" 및 "만기유지환급금"을 지급하기 위한 계약자 적립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
- ② 제1조(특별약관의 체결 및 적용계약)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유효한 계약이 보험기간중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납입한 적립보험료에 한하여 제2조("만기유지환급금"의 정의 및 지급)를 적용합니다.
- ③ 이 보험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"만기유지환급금"을 지급하기 위해 "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"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

제4조(준용규정)

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.